瑞山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檢　討　報　告

1. 提 出 者 : 瑞 山 市 長

2. 提出日字 : 1999. 4. 9

3. 提案理由

하수도사용요금의 체계를 개선하고 요금을 인상하며, 행정규제폐지 및 정비계획에 의거 일부 조항을 폐지하고,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4. 主要骨子

가.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을 시장에게 신고토록 함(안 제7조).

나.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1일 발생량 산정의 기준을 구체화 함 (안 제15조 제3항).

다. 행정규제폐지 및 정비계획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또는 점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시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조항을 삭제함.

라. 하수도 사용료의 경우 의무의 승계 삭제(안 제20조).

마. 행정규제폐지 및 정비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의 제한 사항을 삭제함.

바. 권한의 위임사항을 직제개편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추가 위임함(안 제21조).

사. 하수도 사용요금의 조정

하수도 사용요금을 평균 23% 인상하고, 기본요금제를 폐지하여 요금체계를 세분화하고 업종을 9개업종에서 6개업종으로 통폐합함(안 별표 1).

3. 檢討意見

o 하수도 시설유지 관리를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하수도사용료 부과율이 처리원가의 56% 수준에 불과하여 금번에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요금을 70% 수준까지 현실화 하는 것은 원인자 부담과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합리적이라고 사료됨.

o 또한, 행정규제폐지 및 정비계획에 따라 시장의 허가사항을 신고로, 하수도 사용료 또는 점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시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조항삭제, 공공 하수도 사용제한 사항삭제등을 개정하여 이용자 편의 증진을 도모하였음.

o 기타 표준하수도 사용조례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되는 사항으로써, 서산시 공고 제99-29('99.2.10)호로 입법예고를 거친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